무배당 동부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무배당 동부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보험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기초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 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입자"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법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 장래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4.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 을 말합니다.
 -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7. "운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8. "투자일임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9.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 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10. "사무관리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

- ① 이 계약에서 "단체"라 함은 법 제13조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라 함은 동일 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4조 (계약자)

- 이 계약의 계약자는 법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자로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제5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제1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추가 가입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이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1. 부담금의 통지
 -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
 - 3. 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지시
 -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 6. 적립금의 반환통지
 -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2. 부담금의 수령
 -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5. 급여 등의 지급
 -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 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자산관리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 ① 자산관리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 중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2. 부담금의 종류에 관한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기타사항
- ② 협정서는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연금규약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제3호 제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제25조(금리연동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제28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및 제29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③ 해지환급금 계산시 이율보증형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만기일±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율보증형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

-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 된 자를 추가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 가입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가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에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탈퇴)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피보험단체(보험대상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15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 항에 따른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제17조 (부담금의 종류)

- 이 계약의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표준부담금은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2. 보충부담금은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3. 특별부담금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 4. 일시전환부담금은 타 퇴직급여제도에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사외적립금(연금 자산)에서 전환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18조 (부담금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추가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 가입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 그 추가 가입일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계약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⑤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의 익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운용관리 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해지 청구서(회사양식)
- 2. 해지환급금 수령대상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명부(회사양식) 또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명부 사본

제24조~제25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4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① 금리연동형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25조 (금리연동형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제28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6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 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부담금 납입시 회사의 협정서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각 단위 보험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이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7조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① 이율보증형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28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또는 다른 운용 방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중도해지이율을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율보증기간	보유기간(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1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90%
2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8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90%
3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7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80%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90%
5년형	1년미만	적용이율×50%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60%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70%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80%
	4년이상 ~ 5년미만	적용이율×90%

- 단, 급여의 지급인 경우 또는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제4항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⑤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제38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9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지환급금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급여는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급여(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금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5영업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0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제33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3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제'가'항 또는 제'나'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및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 안정채권형 :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NAV)의 90%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2. Active혼합형40: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3. Active주식형: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60%이상을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40%이내로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4. 배당가치주혼합형40 : 국내 상장주식(고배당이 예상되며 본질가치 대비 저평가된 저 PER, 저PBR 종목 중심), ETF,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 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5. 인덱스혼합형40: 국내 상장주식(KOSPI200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 ETF, 주식관련과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편드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과생상품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과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32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계약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계약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34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배분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35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6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

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및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37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 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8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33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9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0조 (인감신고)

- ① 계약자는 계약자와 운용관리기관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급여 지급 및 기타 업무처리상 인감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위)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4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전환특약의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